

1. 개정이유

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성폭력처벌법”) 개정으로 신분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오기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허가 신청서 및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명시(안 제6조)

현행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 접수 규정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명기

나. 허가 청구·기각 및 기간 연장 관련 서식 정비(안 제97조의2)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관련 기존 서식을 함께 사용

다. 인용 조문의 오기 정정 등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대검찰청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14. ~ 5. 26.)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신분위장수사(이하 “신분위장수사”라 한다)에 대한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(이하 “긴급 신분위장수사”라 한다)에 대한 허가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5제2항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5제2항

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·제8항(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”를 “신분위장수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”를 “신분위장수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”을 “긴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(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신분위장수사”를 “신분위장수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

의 부분 전단 중 “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, 같은 조 제8항 전단 (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5조의 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”를 “신분위장수사”로 한다.

제14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60조 중 “법 제102조제1항”을 “법 제10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07조 중 “별지 제248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46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8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별지 제274호서식 제10항 중 “비정상고이유”를 “비상상고이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)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(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(이하 “영장신청서등”이라 한다)을 함께 접수한다.	제6조(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청소년성보호법”이라 한다) 제25조의3 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	5.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신분위장수사(이하 “신분위장수사”라 한다)에 대한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(이하 “긴급 신분위장수사”라 한다)에 대한 허가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5제2항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3 제3항 및 제25조의5제2항
6. · 7. (생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
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: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, 같은 조 제8항 전단(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,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,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. 1. ~ 3. (생략) ③·④ (생략) 제145조(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신분위장수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145조(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)
--	---

①・② (생략) ③ <u>고등검찰청의 장이 재정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 제160조(보석 등의 취소청구) 검사가 <u>법 제102조제1항</u> 또는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·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. 제207조(통상절차 회부 신청)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<u>별지 제248호서식</u>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. 제284조(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) ① (생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제160조(보석 등의 취소청구) --- --- <u>법 제102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07조(통상절차 회부 신청) 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246호서식</u>----- ----- -----. 제284조(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) (현행 제1항과 같음)
---	--